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조기영



여수시 조례 제2226호

붙임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을 “택시운수종사자들을”로, “위한”을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① (생략)</p> <p>제19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p> <p>2. 장애인의 인권</p>	<p>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9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 위한</p> <p>다음 각 호의 -----.</p> <p>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p> <p>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p> <p>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p>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

<신 설>

<신 설>

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

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

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